

##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

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최저 임금이상 지불하거나 시간 당 \$9.00 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최저 임금은 시간 당 \$10.00 입니다.

2014년 샌프란시스코의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 당 \$10.74 불입니다. 2015년 1월부터 유효한 샌프란시스코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\$11.05; 2015년 5월부터 시간당 \$12.25; 2016년 7월부터 시간당 \$13.00; 2017년 7월부터 시간 당 \$14.00; 2018년 7월부터 시간당 \$15.00 로 오르게 됩니다.

만약 귀하께서 정부나 또는 시티, 카운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면, 별도의 그 지역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Asian Law Caucus 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

## 초과 수당

만약 귀하께서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일했거나 하루에 8 시간 이상 일했다면 귀하의 시간 당 수당의 1.5 배를 초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만약 귀하께서 하루에 12 시간 이상 일한다면, 시간 당 임금의 2 배를 초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.

예를 들어, 만약 귀하의 시간당 임금이 9 불이고 하루에 13 시간씩 한 주에 6 일간 일했다면, 임금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정규 시간	\$9.00 x 40 시간 =	\$360
오버 타임	\$9.00 x 1.5 x 32 시간=	\$432
더블 타임	\$9.00 x 2.0 x 6 hours =	\$108
<b>전체 페이</b>		<b>\$900</b>

\* 30 분간의 무보수 점심시간을 받았다고 가정할시

만약 귀하께서 한 주 동안 7 일간을 쉬지 않고 일했다면, 일곱번째 날에는 귀하의 첫 8 시간은 시간 당 임금의 1.5 배이고 더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시간 당 임금의 두배를 받는 더블 타임 레이트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귀하가 시간 당 9 불을 받으시고, 하루에 12 시간씩 7 일째 일하고 있다면, 임금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정규 시간	\$9.00 x 40 시간 =	\$360
오버 타임	\$9.00 x 1.5 x 40 시간=	\$540
더블 타임	\$9.00 x 2.0 x 4 시간 =	\$72
<b>전체 페이</b>		<b>\$972</b>

\* 30 분간의 무보수 점심시간을 받았다고 가정할시

**NOTE:** 최저 임금과 초과 수당법이 적용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귀하께서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ALC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.

## 추가적인 권리

**권리 포기 불가능:** 최저 임금과 초과 수당에 대한 권리는 포기 불가능한,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입니다. 귀하께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최저 임금보다 더 적게 받겠다고 동의한 경우라도, 귀하의 고용주는 법에 의해 규정된 최저 임금과 초과 수당을 귀하께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고용주에게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과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한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.

**보복:** 피고용인이 미지급된 임금 또는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클레임을 걸거나 고용인에게 지불을 요구했을 때 고용인이 그러한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**일반적으로,** 보복성 행위에 대한 클레임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접수되어야 합니다.

**식사/ 휴식 시간:** 귀하가 일한 4 시간마다 10 분간의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5 시간의 근무 시간 후에 최소 30 분의 무보수 점심 시간을 취할 수 있습니다.

**식사 시간 동안 일하기:** 만약 식사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면, 귀하께서는 그러한 식사 시간 동안 일한 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고용주가 제공한 식사:** 고용주가 제공한 식사는 귀하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, 최저 임금에서 감하여 질 수 없습니다.

##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 당했을 때

**번 수당의 즉시 지급:** 귀하의 고용이 종료되었을 때, 고용주는 귀하가 번 모든 수당을 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 만약 미리 알리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다면, 고용주는 72 시간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.

**휴가와 휴일 임금 지불:** 휴가와 휴일 수당을 받기로 되어있었다면, 귀하가 해고당한 날 또는 그만둔 날짜까지 비례하여 생성된 휴가와 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웨이팅 타임 벌금:** 귀하의 고용주가 제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, 하루치의 일당이 밀린 날짜만큼 (30 일 한도) 웨이팅 타임 벌금으로 고용주에게 부과되어, 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

## 식당 직원의 경우

**분할 근무:** 분할 근무를 한 날에, 경우에 따라 귀하께서는 한시간의 분할 근무 프리미엄(시간 당 최저 임금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예를 들어, 런치 타임에 일하고 다시 디너 타임에 일하는 경우)

**팁:** 고용주는 팁을 임금의 일부로 계산하여 피고용인에게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팁을 한꺼번에 모으거나, 비경영진 스태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합법입니다.

## 법적 구제 방법

귀하께서는 3년 동안의 미지급된 최저 임금과 초과 수당에 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행정적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음과 같은 정부 기관에 미지급된 임금 반환을 요청할 시에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**샌프란시스코 최저 임금제 위반 시:**

Office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 
City Hall, 1 Dr. Carlton B. Goodlett, Room 430  
San Francisco, CA 94102  
(415) 554-6292

**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 시간 당 \$9 및 노동법 위반 시 일하신 카운티에 청구하십시오:**

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(DLSE) (or, CA State Labor Commissioner)  
455 Golden Gate Avenue, 10<sup>th</sup> Floor East  
San Francisco, CA 94102-7001  
(415) 703-4810 (English, Spanish, Cantonese)

1515 Clay Street, Suite 801  
Oakland, CA 94612  
(415) 622-3273

DLSE 오피스의 위치를 확인하려면,  
[www.dir.ca.gov/dlse/districtoffices.htm](http://www.dir.ca.gov/dlse/districtoffices.htm).

**연방 최저 임금제-현재 7.25 불 위반시: U.S.**  
Department of Labor  
90 7<sup>th</sup> Street, Suite 12-100  
San Francisco, CA 94103  
(415) 625-7720

귀하께서는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스몰 클레임 법원은 밀린 임금이 \$7,500 이하 일 때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어드바이저를 제공합니다. 스몰 클레임에서는 변호사를 구할 필요가 없고, 변호사는 스몰 클레임 법원에 설 수 없습니다. 만약에 밀린 임금이 \$7,500 이 넘을 경우에 지방 법원에 임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**문제가 일어나기 전 주의사항**

**고용주에 관해:** 고용주의 영어 이름과 함께 직장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계십시오.

**근무 기록에 대해:** 달력에 매일 근무 시간을 기록하여,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지 증명 가능하도록 하십시오. 만약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편지를 고용주에게 썼을 경우, 고용주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명으로 편지의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.

**중요한 서류의 복사본에 관하여:** 직장을 떠난 후에도 귀하의 타임 카드와 급여 기록을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귀하께서 서명하도록 요구된 모든 자료에 대해 복사본을 요구하시고, 급여명세서와 W-2 형식의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. 귀하의 급여수표를 현금화할 수 없다는 모든 은행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.

**노동허가 비소지자에 관하여:** 모든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은, 법적으로 노동이 허가되어 있는 것에 상관없이 주와 연방의 임금보호법 아래 보호됩니다. 귀하께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셔도, 밀린 급여에 관해 청구 소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귀하의 권리에 질문이 있으시면, 매 달 각 1,3 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무료 법률 상담 Clinic 에 아래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(415) 896-1701

**내 권리 알기:  
노동 기준법  
Wage and Hour**



55 Columbus Ave.  
San Francisco, CA 94103

전화 (415) 896-1701

팩스 (415) 896-1702

[www.asianlawcaucus.org](http://www.asianlawcaucus.org)

**Advancing Justice-Asian Law Caucus** 의 임무는 동양인과 환태평양 섬 출신 커뮤니티의 법적 권리를 증진 및 발전시키고 그들의 민사상 권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. 사회적, 정치적, 경제적, 그리고 인종적 비평등이 미국 내에 계속 존재함을 인지하고, **Asian Law Caucus** 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으며, 특히 저소득 동양인과 환태평양 섬 출신들을 돕는데 그 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

© 2014 Asian Law Caucus  
이 안내문은 Asian Law Caucus 에서 발행한 것으로, 안내문의 자유로운 복사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. 사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.